

지방재정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개혁성과와 발전방향

현 진 권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I. 서 론

우리나라는 1997년말 외환위기를 맞이하여 사회전반에 구조적 개혁을 추진한 바있다. 또한 IMF에서 권고한 개혁방향에서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원칙이 투명성 확보이다. 투명성 확보는 우리 사회의 부조리, 불합리, 불공평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인 것이다.

경제적 관점에서 볼 때 투명성 확보는 경제주체들 간에 정보의 대칭성을 회복하는 것을 의미한다. 경제주체들 간에 비대칭적인 정보관계가 유지되면, 경제구조는 비효율적인 자원배분을 낳을 수 밖에 없으며, 또한 부조리를 통해 엄청난 사회비용을 야기한다.

정부의 재정구조에 대한 투명성은 정부재원의 효율 및 효과적인 집행을 위해 정

부와 국민들간에 대칭적 정보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재정구조의 투명성은 재정구조의 단순성과 관련 정보의 제공 등을 포함한 개념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지방재정의 투명성은 지방정부의 세입과 세출구조를 지역민들이 파악하는데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특히 지방정부의 재정이 충분하지 않은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의 실태를 볼 때, 지방정부 재원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투명성 확보는 필요조건이라고 할수 있다.

투명성 확보라는 차원에서 지방정부의 세입과 세출분야에서의 문제점과 발전방향을 모색할 시점이다. 여기서는 지방정부재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재정, 세제, 세정의 세가지 분야로 나누어 각 분야에서 제기되었던 문제점과 발전방향을 제시한다.

II. 지방재정의 실태 및 문제점

1. 지출부문

지방재정을 투명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통계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지방재정부문에도 재정통계시스템이 존재하고,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분석과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지방재정의 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대표적인 자료로는 지방재정연감과 지방자치단체 예산개요를 들 수 있다. 그밖에도 개별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재정통계와 각종 재정보고서들이 산출되고 있는데, 그 기능과 유효성에는 한계가 있다.

현행 지방재정의 투명성확보를 위한 기초자료가 되는 지방재정통계 및 재정분석은 다음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¹⁾. 첫째, 현재 현금주의 단식부기 회계체계를 바탕으로 한 재정통계와 재정분석지표는 자치단체를 객관적으로 분석하는데 기본적인 한계가 있다. 현금주의에 의한 회계방식은 현금의 입금과 출금을 바탕으로 한 기초적인 체계로서, 지방정부 사업의 성과를 비용과 연계하여 분석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둘째, 지방정부의 수입과 지출에서 순수 재정활동과 비순수 재정활동을 구분해 주는 체계가 없어 재정 건전성을 평가하는데 한계가 있다. 참고로 IMF의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Manual에서는 지방채,

세계잉여금, 이월금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순수한 재정활동과 무관한 것으로 간주하고, 재정수지 산정에서 제외하고 있다. 셋째, 지방재정통계와 분석이 일반회계 중심으로 구성되어, 특별회계와 기금 등을 포함한 통합회계 관점의 재정통계분석체계가 구축되지 않고 있다. 아울러 정부지출의 성격을 경상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로 구분해 주는 회계기준이 없기 때문에 재정지출로 인한 정부의 소비와 저축에 관한 통계분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넷째, 재정분석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통계기반이 약하고, 지방예산회계제도를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이 체계적으로 개발되지 못하고 있다.

2. 지방세제 부문

지방재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세제부문에서의 문제점을 살펴본다. 지방재정 재원의 대부분은 부동산을 기반으로 하는 세제에서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부동산의 과세기반이 투명하게 구축될 경우, 부동산 관련세제를 통한 재원확보는 투명할 수 밖에 없다. 현재 우리나라 부동산 관련과세기반을 살펴보면, 시장가격과는 괴리를 가지고 있다. 이상적인 과세기반은 부동산 거래가액이 모두 정직하게 정부에 신고되고, 이를 바탕으로 해당 부동산에 대한 과세표준을 산정하고 이전관련 세액과 보유관련 세액을 계산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행 부동산 관련세제는 시장가격이 아닌 정부에서 산정한 가격을 바탕으로 과세되고

1)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임성일, 원윤희 (2002), “우리나라의 재정통계 및 재정분석에 관한 연구: 지방재정부문을 중심으로”,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

있다. 정부에서 산정한 가격은 높은 행정 비용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시장가격과 괴리를 가질 수 밖에 없어 세부담의 불공평성 문제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실제 세율이 높다고 해도, 과표가 제대로 시장가격을 반영하지 못할 경우에는 제도가 의도한 것보다 훨씬 낮은 세부담으로 나타난다. <표 1>은 부동산을 이전하는 경우에 부담하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5%로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과세표준이 시장가격과는 현저하게 차이가 나서, 과표가 시장가격의 50% 정도만 반영할 경우에는 2.5%의 유효세율을 부담하게 되고, 과표가 30%만을 반영할 때는 1.5%의 유효세율으로 나타난다.

<표 1> 과표변화에 따른 부동산 취득 등록세 부담의 차이

시가 3억원	과표: 50% 반영	과표: 30% 반영
1,500만원	750만원	450만원

높은 행정비용을 지불하며 재산과세기반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장과 괴리된 부동산 제도로 인해 야기되는 세부담의 불공평성 문제를 살펴볼도록 한다. 부동산 과세기반은 토지분과 건물분으로 나누어 과세하고 있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토지분과 건물분으로 나누어 가격이 산정되지 않고 전체 합산가격이 나타난다. 이러한 정책수단과 현실과의 괴리는 부동산 세제를 불공평하게 만드는 가장 핵심적인 사항으로 평가할 수 있다. <표 2>는 강남과 강북에 위치한 아파트로서 시장가격이 3억 4천만원으로 같으나, 강남의

경우는 26평, 강북의 경우는 49평으로 이에 대한 부동산 관련 세부담의 실태를 보여준다. 먼저 건물분 재산세의 경우에는 강북 아파트의 평수가 상대적으로 크므로, 훨씬 높은 재산세액을 부담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토지의 경우에는 강남이 단위 면적당 가격은 높으나, 평수가 강북이 상대적으로 높아, 실제 시장가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결과적으로 종합토지세도 강북이 높은 현상을 알 수 있다. 건물과 토지를 합한 전체 세부담을 비교하면, 같은 시장가격을 가지고 있는 두 아파트의 경우에 강북이 강남에 비해 3배 가량 높은 세부담을 보여준다. 이러한 세부담의 불공평성은 시장에서 측정할 수도 없는 가상적인 건물분 가격을 바탕으로 한 조세정책으로 야기된 결과이다.

<표 2> 지역에 따른 세부담액의 차이(시가 3억 4천만원 아파트의 경우)

지역	평수	재산세액	종합토지세액	합계
강남	26평	100,910원	61,490원	162,400원
강북	49평	371,750원	115,150원	486,900원

재산기반 정보를 과소보고하도록 하는 제도적 유인책으로 취득 및 등록세의 과표를 들 수 있다. 먼저 취득 및 등록세의 과표는 행정자치부의 과세시가표준액과 검인계약서 상의 신고가액 중 높은 것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과세시가표준액이 실제가액의 50% 수준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신고가액을 이와 유사한 수준으로 신고하게

하는 제도적 유인이 된다. 따라서 부동산의 취득 및 등록세 부담은 거의 대부분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관행으로 정착하게 되었다.

3. 지방세정 부문

1990년대는 급속하게 진행된 정보화를 발판으로 선진화된 전자 세정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 시기이다. 아직까지 전국적인 지방세 전산망의 구축이 완료된 것은 아니지만, 이 기간 동안 민간업자들의 참여 등을 통하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상당히 선진화된 전산세정 환경을 구축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그 동안에 진행되었던 전산화 작업을 전국적으로 연계하여 선진적인 전자 세정을 구축하기 위하여 지방세 전산화 4대 중점과제를 개발, 체계적인 전산화 작업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또한 1990년대 전반기의 세정 전산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1997년에 자동차 등록세 수납을 담당하는 은행직원에 의한 자동차 등록세 횡령사건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자동차 등록과 대금 수납을 착오 없이 대사는 데 필요한 전산화 작업이 진행되었다.

지방세 전산화 작업은 지난 30년간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지만, 1990년대 초반까지의 전산화 작업은 사실상 매우 기초적인 것이었고, 실질적인 전산화 작업은 정보화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1990년대이었다. 특히 1997년 자동차 등록세 비리 사건이 발생한 이후, 지방세 세정이 전산화되기 위해서는 지방세 체계 내에서 뿐만 아니라, 등록업

무, 지적, 주민등록 행정전산망 등 각종 관련 전산망과의 연계성이 중요하다는 점이 인식되었다. 그 결과 지방세 전산화 4대 중점과제가 추진되었다.

가. 세무전산망과 외부전산망의 연계

1990년대 후반 전산화 4대 중점과제가 시행된 가장 주된 원인은 세무전산망과 외부전산망간 연계의 필요성 때문이었다. 지방세 세정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독립적인 전산 시스템하에서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1990년대 초 중반의 전산화 작업에도 불구하고 네트워크의 전국적인 연계성은 국세에 비하여 크게 떨어진 상태이었다. 특히 지방세 자료는 토지자료, 주민등록자료, 등기자료 등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지만 이러한 네트워크와의 연계성은 미진한 상태이었다. 또한 세무전산망과 주민등록관리전산망, 지적관리전산망 등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한 전산망 구축을 위해서는 업무별 주전산기의 용량이 증가될 필요도 있었다. 지방세 전세목에서 수시로 발생하는 체납자의 현주소 파악을 위한 전산자료의 적기 제공체계를 행정자치부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주민등록관리전산망의 업무량 과부하 문제 등을 발생시키는 문제를 안고 있었고, 지방세 과세자료로 활용 가능한 다른 기관의 전산자료를 실태조사하는 것도 미흡한 상태이었다.

지방세 세무 전산망과 외부전산망과의 연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안이 고려되었으나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네트워크를 행정자치부의 주전산기에 모두

<표 3> 지방세업무와 관련한 전산자료

구 분	지방세 업무	관련 부서
주민등록, 전산자료	주민세, 체납업무, 고지서	행정자치부
부동산 전산자료	취득세, 등록세, 종합토지세	
자동차 전산자료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 면허세	
개별공시지가 전산자료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개별공시지가 적용 세목	건설교통부
주택 전산자료	체납업무	
등기관련 전산자료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체납업무	법원
국세청 전산자료	주민세	국세청
인적정보	체납업무	연금관리공단 의료보험조합 등

연결시키는 것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하는 시스템의 비호환성으로 인하여 비현실적이라고 판단되었다. 따라서 각각의 네트워크를 통하여 얻어진 전산자료를 표준화하여 이를 토대로 행정자치부가 자체적인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종합적인 세무전산 정보를 획득하는 방식을 택하게 되었다. 즉, 세무전산망에 필요한 자료의 자동적인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연계전산망이 구축될 때까지는 파일구축이 용이한 시도 단위로 별도의 파일로 구축하여 처리하되, 자료의 제공 주기, 범위, 활용권한 등의 기준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또한 지방세 과세자료로 활용 가능한 타기관 보유 전산자료를 일제 조사하여 이를 활용하는 방안들이 강구되었다. 이러한 종합적인 통합파일 구축 작업은 행정자치부가 예산을 확보하여 주도한 시군구행정종합정보화

사업(1997~2002)과 연계하여 추진되었다.

나. 지방세 전산망 통합관리

1990년대 후반 지방세 전산망을 구축함에 있어서 애초에 기대했던 것은 각각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세무전산망을 전국적으로 연결하여 실시간으로 지방세 정보를 중앙에서 획득할 수 있는 것이었다. 그러나, 시군구별로 설치된 전산기기의 기종과 성능이 각각 차이가 나기 때문에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어렵게 되어 있었다. 또한 시군구의 전산프로그램이 세목별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연관 세목 간 과세자료의 공유 활용도 불가능하였으며, 각 세목별로 과세자료를 이중으로 입력해야 하는 등 업무의 비효율성이 초래되고 있었다. 납세자 관리에 있어서도 납세자별로 과세자료 처리내역 관리 등 단순조회

프로그램만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관련 세목간 연계 능력이 부족하였다. 그리고 시군구와 읍면동간 연결되어 있는 온라인망의 처리속도와 회선의 품질 문제도 발생하였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전국적인 지방세 전산망을 통합관리하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기종간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연계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었다. 따라서 시군구에서 기기를 추가로 도입하였고, 기기변경이나 DB를 도입할 때에는 광역망 연결과 세무통합망 구축이 가능하도록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기준을 마련하였다. 또한 시군구별로 사용하고 있는 지방세 프로그램에 대한 기능을 진단하여 일정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를 개선·보완하고 향후 개발·보급되는 프로그램에 대한 표준화된 형식을 설정하였다. 그리고, 시도별 광역망 연계 작업시 활용할 수 있는 자료송수신표준형식을 정하여 운영하였으며 시도-시군구-읍면동간 활용하고 있는 전용회선에 대한 처리속도 향상 및 회선 품질 개선 작업을 추진하였다.

다. 지방세 전산코드 및 서식 표준화 작업

지방세 세무의 통합관리는 전국적인 네트워크가 통합·관리되지 않더라도 개별적으로 생성된 자료들이 표준화된 코드로 작성되어 있을 경우에는 중앙 차원에서의 자료의 취합과 통합이 용이하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 지방세 전산화 4대 중점과제가 추진될 당시에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는 전산 프로그램의 코드가 표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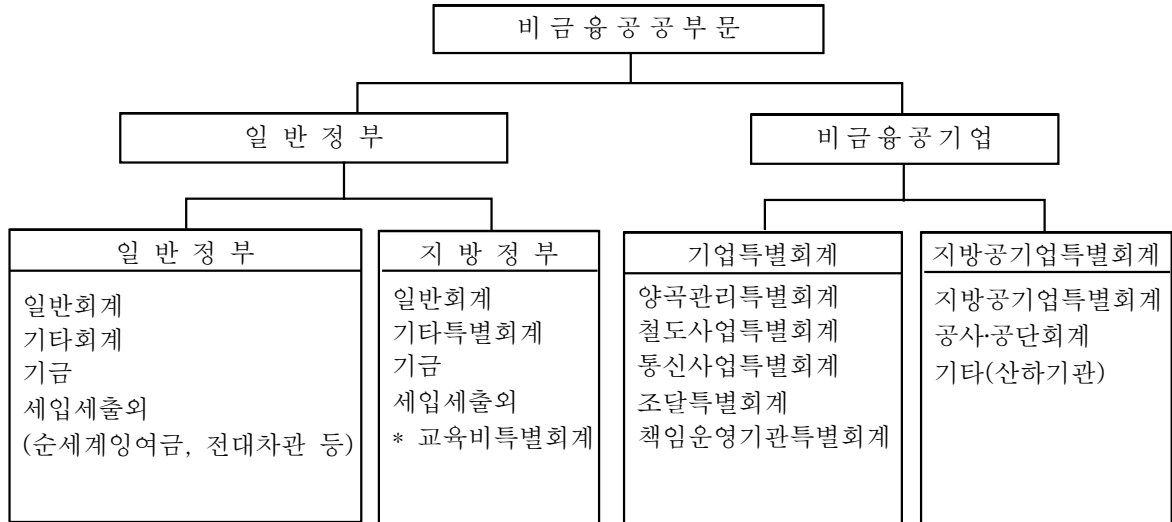
되지 않아서 개별 전산자료의 자동적인 전산 통합이 불가능하였다. 특히, 지방행정공동표준코드집에 지방세관련 전산코드는 자동차세 용도구분 등 37종 325개 코드만 표준코드로 지정되어 있어 자료의 호환성이 결여되어 있었다. 또한 지방세 업무 서식에 있어서도 지방세관련 전산코드가 지방세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121종과 지방세부과징수규칙에 규정된 146여종으로 되어 있으나 자치단체별로 필요에 따라 서식을 변형하여 사용함에 따라 표준화가 되어 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지방세 전산코드에 대한 표준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부의 지로표준화사업과 시군구행정종합정보사업 등과의 연계방안을 검토하였고, 표준화된 코드를 지방세 업무에 즉시 적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노력이 기울여졌다. 즉, 지방세업무를 처리하는 서식표준안을 작성할 때에는 과세대장, 과세내역서 등 유사한 서식은 한 가지로 축소하고, 수기위주의 서식은 전산서식으로 변환하는 등 서식의 표준화 간소화 작업이 추진되었다.

라. W/S와 TICOM의 세무전산기기 운영발전

세정의 전산화는 각종 관련 전산망과의 연계, 종합적인 DB의 구축 등 기본적으로 하드웨어의 업그레이드와 용량 증가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전산기기가 노후하고 용량도 부족하여 신속한 전산 처리에 어려움이 발생하였다. 이는 결국 광역적인 데이터 처리를

[그림 1] 한국 통합재정의 포괄범위



주 : 교육비 특별회계와 지방의 기타특별회계는 중·장기적으로 달리 처리될 수 있음(기타특별회계 중 일부는 지방공기업의 특성을 지니기 때문임).

위한 시군구행정종합정보화시범사업의 계획에 따라 구상되고 있는 세무전산망 자료 연계 활용에 문제점을 발생시킬 것으로 예상되었다.

또한 지방세자료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색인파일 구조를 관계형 DB로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당시 활용되고 있는 W/S 및 TICOM의 기능에 대한 분석과 기기별 성능향상 기준안이 마련되었고, 기기변경 및 DB도입을 위한 기본환경 및 사양에 대한 자료들이 각 지방자치단체에 제공되었다. 또한 시군구행정종합정보화사업을 추진할 때 전산장비의 낙후와 호환성 부족으로 인하여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보완 대책이 마련되었다.

III. 발전방향

1. 재정부문

재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관련 자료가 우선적으로 정비되어야 한다. 앞으로 재정의 국제간 비교는 개방화 경제속에서 개혁을 가속화하기 위해 꼭 필요한 기초자료로 볼수 있다. 따라서 IMF에서 제시하는 통합재정수지를 근거로 한 정부의 재정구조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지방재정에 대한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 즉 모든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적인 영향과 통제를 행사하고 있는 기관 및 단체의 경제적 활동을 포함시켜야 한다. 구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예산회계 단위와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하여 간접 관리하는 지방공사 및 공단의 관련 예산회계도 재정통계분석의 대상으로 포함하여야 한다.

지방교육재정은 통합재정에 포함하는 것이 원칙이나, 일반자치와 교육자치가 이분화된 우리나라의 특수한 환경을 고려할 때 단기적으로는 지방통합재정제도의 대상범위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겠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통합재정 범위는 [그림 1]과 같다.

또한 재정구조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되는 정부간 재정이전, 세계잉여금, 예비비, 순계처리 등과 같은 부문에 대해 확실하게 정비해야 한다. 아울러 회계인식 기준을 현금주의에서 발생주의로 전환하여 지방정부 재정투자의 성과를 분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성과주의 예산은 지방정부 재원지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이므로, 지방정부 회계에 대한 기초자료 정비를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 지방예산회계제도에서 복식부기가 도입될 경우, 기존의 통계 및 지표는 대폭 수정되어야 한다. 발생주의에 기초한 복식부기제도는 자산과 부채의 가치변동과 관련된 모든 가치변화를 파악해야 한다. 또한 수입·지출 중심의 현금주의 회계와는 달리 자산·부채·순자산·비용·수익 등이 중요한 회계개념이므로, 이에 맞는 통계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2. 지방세제 부문

우리나라 부동산 관련 세제는 종합토지세와 건물분 재산세로 이원화되어 있다. 따라서 토지와 건물로 이원화되었으므로 토지가격과 건물가격 산정을 위해 정부는 높은 행정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물분 재산세의 경우에는 건물가격이 시장에서 파악될 수 없는 허구의 가치이므로 이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세제는 근본적으로 불공평성을 내포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부동산 거래가액은 토지와 건물분을 합한 부동산에 대한 가액이므로, 이러한 시장가격을 바탕으로 세제를 개편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종합토지세와 건물분 재산세를 통합하는 것이 우선과제이다. 실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제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매수자와 매도자가 담합하지 않고, 정직하게 신고하도록 이해관계가 대립되도록 메카니즘을 만들어야 한다. 이때 1가구 1주택에 대한 면세조항은 너무 많은 가구에 적용되므로, 폐지할 필요가 있다. 1가구 1주택 면세조항이 중산층 이하에 대한 형평성 제고를 위해 고려된 정책인 만큼, 이러한 취지를 만족시키면서 실거래가액을 사용할 수 있는 제도적인 디자인이 필요하다. 즉, 1가구 1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의 일정부분(예를 들면 5천만원)을 면세함으로써 실거래가액에 대한 시장정보를 행정비용없이 확보하는 반면, 1가구 1주택 가구에 대한 세제의 형평성을 더욱 높이는 추가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²⁾.

-
- 2) 1가구 1주택 가구로 10평과 50평의 아파트는 양도소득에 있어서 격차가 심하지만, 같은 면세조항이 적용되므로 불공평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3. 지방세정 부문

지방세 세정업무의 전산화 작업은 그 동안 많은 진전이 있었고, 특히 1990년대 후반 추진된 지방세 전산망과 외부 전산망과의 연계, 지방세 전산망 통합관리, 지방세 전산코드 서식 표준화 등은 지방세 업무를 전산화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발전이었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지방세 전산행정은 여러 가지 면에서 발전의 여지가 있는 데 현재의 지방세 전산화 상황을 요약하면, 지방세 전산화의 전국적인 표준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표준화되어 있지 않아 시군구간 호환성이 아직 되지 않고 있다. 또한 전용통신망의 미구축으로 인하여 광역단위 통합자료의 관리에도 어려움이 있다. 또한 세목별 업무별 전산화로 각 자치단체별 과세자료의 공동활용도 어렵게 되어 있다.

따라서, 향후 지방세의 전산행정이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방세의 종합전산화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특히 세원관리, 부과징수, 수납, 체납세 관리, 민원통계업무와 같은 지방세 관련 각종 업무들의 일괄처리가 가능한 세무종합 D/B의 구축이 필요하고, 지방세 관련 자료의 종합적 관리체계를 확립하여 전자계산 처리체계(EDPS)에서 경영정보화 체계(MIS)로의 전환도 필요하다. 광역전산망 구축을 통하여 시군구와 시도간, 지방과 중앙간 세무자료 정보의 신속한 교환을 가능하게 하는 전국단위 통합관리체계의 구축

도 필요하다.

지방세 세무 행정의 궁극적인 목표는 단순히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 측면에서의 전산화와 통합화에 머무르지 않고 이러한 전자세정 환경을 기반으로 세무행정의 과학성과 능률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특히 전자문서교환(EDI) 체제 구축을 구현하여 민원 처리의 자동화를 이룩하고 금융망과 각종 통신망과의 접속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전자세정을 바탕으로 과세자료를 과학적으로 관리할 경우 세정의 합리성이 제고되고 납세순응비용도 저감될 것이다. 동시에 지방세 전산행정의 과학화를 통하여 각종 탈루·은의 세원의 감소 및 착오로 인한 부당 과세를 줄이는 노력도 지속적으로 기울여야 한다. 

